참고 자료 1 건강보험료 기준 및 가구원수 적용 매뉴얼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외)조부, (외)조모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기혼인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포함(단, 원수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만 인정).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미포함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친부 또는 친모)를 포함하여** 가구원 수 산정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을 확인하여 합산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친부와 친모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하여 합산

③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방법

❍ (산정) 건강보험자격확인서(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고지금액 및 연말정산금액(분할)납부청구액은 합산하지 않음

– 직장가입자의 경우,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시 **휴직 전 6개월간 실제 고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

※ 전형일 이전 6개월 중 중간에 휴직한 경우: **중간휴직 이후 일부 고지된 달이 있다면** 해당 개월 수와 중간휴직 전 고지된 개월 수를 합하여 6개월 분으로 산정

❍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혼합 6만2천원)

※ 기타 건강보험료 산정 및 사례는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사회통합전형 관련 Q&A' 참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안내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 제91조의4, 제97조, 제104조의7, 제106조의3 및 본교 입학전형 실시 계획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지원자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증명사진, 연락처, 주소, 학력, 출결사항, 지원 유형에 따른 자격 증빙 내용
- 보호자 :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생년월일, 건강보험료 또는 재산세 부과 내역* 및 지원 유형에 따른 자격 증빙 내용

*사회통합전형 해당자에 한함

(목적) 신입생 선발 및 입학 관리 업무

(보유기간 및 이용 기간) 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리 기준표)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6조, 제91조의4, 제97조, 제104조의7, 제106조의3

2. 민감정보 수집 · 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지원자 및 학부모 장애 정도,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국적

(목적) 신입생 선발 전형 중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확인(해당자에 한함)

(보유기간 및 이용 기간) 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리 기준표)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4

3. 제3자 제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 기관) 출신 중학교(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경기도교육청

(제공받는 기관의 목적) 지원 자격·지원 결격 사유 조회, 이중지원 확인,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

(제공 항목) 학생 이름, 학년, 반, 번호, 성별, 생년월일, 출신 학교명, 지원 고등학교명, 합격·불합격 여부

(보유기간 및 이용 기간) 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리 기준표)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 제106조의3